

RIS 대학교육혁신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1. 24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지침」 제6조에 의하여 참여대학의 교육혁신과 BITS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(이하 “플랫폼”이라 한다) 대학교육혁신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위원회) ① BITS 공유대학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본부장, 부분부장, 핵심분야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핵심분야별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40% 이상 산업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BITS 공유대학 교육과정의 설계·편성·운영 계획
2.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
3. 그 밖에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본부 소속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⑧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⑨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조(교육혁신운영위원회) ① 본부의 사업 운영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하여 교육혁신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본부장, 부분부장, 핵심분야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교육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부 사업의 기획 및 주요 운영 계획
2. 본부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
3. 본부 예산의 편성 및 결산
4. BITS 공유대학 학생 선발·지원·관리 등 학생 관련 제반 사항
5. BITS 공유대학 전공·트랙·마이크로디그리 등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
6. 그 밖에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본부 소속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⑧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교육혁신평가위원회) ① 본부 사업실적의 성과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혁신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부분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 및 산업체 등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,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 50%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,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교육혁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자체평가 계획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
2. 연차별 대학교육혁신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
3.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본부 소속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⑧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⑨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기타 위원회) 본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실무위원회, 자문위원회 및 T/F 등을 둘 수 있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플랫폼 대학교육혁신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